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준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3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18일  
발 의 자: 서준오,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박강산,  
박승진, 박철성, 유정인,  
이병도,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최재란, 한·신 의원(17  
명)

## 1. 제안이유

-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안 제4조)
-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제6조)
-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제8조)
- 마.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안 제10조)
- 바. 청년친화도시 지정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 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청년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친화 영향평가) 시장은 청년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050300000004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서준오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05.03.

회신일 : 2023.05.15.

내용문의 : 02-2180-7955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정책연구 등),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제13조(경비지원) 및 제15조(교육 및 홍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시에서 현재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현저히 다를 수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참조]

2023년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

세부사업명	편성목	예산현액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	계	2,107,0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004,400
	마을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용	764,457
	마을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용(성동구)	38,223
	청소년의 올바른 발육발달 지원사업	300,000

자료 : 2023년 서울시 평생교육국 예산서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5

e-mail : kjh0123@seoul.go.kr